

동 의 서

본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, 제56조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제39조, 제44조에 따라 장학금(2024년 2학기) 이중지원발생으로 장학금 반환 시 재단법인 봉은재단이 아닌 한국장학재단 및 이중지원기관의 장학금 및 대출금을 우선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성 명 :

소 속 : 대학교 과

생년월일 :

2024 년 월 일

성 명 (서명)

재단법인 봉은재단 귀중